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586호

「주택도시기금 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도시기금 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주택도시기금 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위험관리위원회 및 성과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자산운용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당연직 직위 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험관리위원회 및 성과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자산운용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도록 규정(안 제20조제5항 및 제23조제5항)

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당연직 직위 명칭 변경 및 단순 오기 사항 반영(안 제20조제4항 및 제23조제4항, 제24조, 제27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5월 7일까지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E - mail : djpaek@korea.kr, jeongmin89@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전화 044-201-3344, 33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